

가나 (Ghana)

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보험료율	18.5%	18.5%	-
보험료 부과 상한 / 하한 소득	-	25,000 / 287.55 cedi	상하한 소득 신설
적용대상	-	특별제도 미포함 공공부문 근로자	당연적용대상 확대
연금수급 개시 연령	60세	60세	-
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	180개월	180개월	-
최소연금액	276 cedi	300 cedi	최소연금액 인상
일시금	장애일시금 제도 有	장애일시금 제도 無	장애일시금 지급 중단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65년(적립금고), 1972년(사회보장), 1991년(연금)
- 현행법 : 2008년(국민연금), 2010년 시행

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(Social insurance system)
- 의무직역연금제도(Mandatory occupational system)

3 적용대상

- 당연적용 : 고용된 근로자 및 특별제도 미포함 공공부문 근로자
- 임의적용 : 자영자, 이전 가입이력 보유 실업자
- 특별제도 : 군인, 고위직 공무원

4 재원조달

- 가입자 : 소득의 5.5%(임의가입자는 신고소득의 18.5%)
 - 가입자 및 사용자의 보험료 중, 11%는 노령.장애.유족 사회보험급여 재원으로, 5%는 의무직역연금 재원으로, 2.5%는 의료급여 재원으로 활용

- 자영자 : 신고 소득의 18.5%
 - 보험료 중, 11%는 사회보험 재원으로, 5%는 의무직역연금 재원으로, 2.5%는 의료급여 재원으로 활용
- 사용자 : 임금지급총액의 13%
 - 가입자 및 사용자의 보험료 중, 11%는 노령.장애.유족 사회보험급여 재원으로, 5%는 의무직역연금 재원으로, 2.5%는 의료급여 재원으로 활용
- 정부 : 없음, 사용자로서 기여
- 보험료 산정 위한 월 하한 및 상한소득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하한소득은 법정 최저임금과 동일
 - 법정최저임금 : 월 287.55 cedi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소득은 월 25,000 cedi

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- 노령연금
 - 노령연금 (사회보험) : 보험료 납부기간 180개월 이상, 60세(위험업종 종사자는 55세) 도달
 - 조기연금 : 보험료 납부기간 180개월 이상, 55세 도달
 - ※ 노령연금 해외지급 불가
 - 노령일시금 (사회보험) : 보험료 납부기간 180개월 미만, 60세 도달
 - 노령급여 (의무직역연금) : 60세 도달
 - 조기급여청구 : 55세 도달하고 실업 또는 자영인 경우
 - 영구 이민 또는 고용 조건에 따라 55세 이전 퇴직인 경우에도 연령 상관없이 조기 청구 가능
- 장애연금
 - 장애연금 (장애연금, 사회보험) : 영구장애 및 소득활동 종사(고용) 불가로 판정되고, 장애 시작 전 36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
 - 장애판정은 자격 있고 인정받은 의료 공무원이 심사하고 사회보장 및 국가보험 의료 공무원이 포함된 지역의료위원회에서 공인되어야 함
 - ※ 장애연금 해외지급 불가
 - 장애급여 (의무직역연금) : 완전하고 영구적인 장애 판정
- 유족연금
 - 유족일시금 (유족급여, 사회보험) : 사망당시 가입자가 75세 미만인 경우 지급
 - 수급 가능한 유족으로는 미망인(홀아비), 고아, 부모 및 사망한 가입자에 의해 지정된

유족이며, 반드시 사망한 가입자에게 있어 일부 또는 완전한 피부양자였어야 함

※ 유족일시금 해외지급 불가

- 유족급여 (의무직역연금) : 가입자가 통상적인 퇴직연령 도달 전 사망한 경우
 - 사망한 가입자가 지명한 자가 수급 대상이 되며, 지명자가 없는 경우 의무직역연금 제도에 규정된 유족이 수급
- ※ 유족급여 해외지급 불가

6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연금

- 노령연금 (사회보험) : 가입자의 소득수준이 가장 높았던 3년간 연평균임금의 37.5% + 180개월을 초과하는 가입기간 1개월 당 연평균임금의 0.09375% 증액
 - 최저연금액 : 월 300 cedi
 - 최고연금액 : 가입자의 소득수준이 가장 높았던 3년간 연평균임금의 60%
 - 조기연금 : 가입자의 수급 개시연령에 따라 완전연금액의 60%(55세) ~ 90%(59세)
 - 급여조정 : 급여액은 매년 재심사하고 전체 납부자 임금의 평균 증가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노령일시금 (사회보험) :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총액에 가산이자를 더한 금액 지급
 - 가산금리는 국고채(Treasury bill) 91일물 금리의 75%로 정함 (2019년 7월 1일 기준 국고채 91일물 금리는 14.7438%)
- 노령급여 (의무직역연금) : 총 납입보험료(사용자+근로자)에 경과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
 - 조기연금 : 노령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

○ 장애연금

- 장애연금 (장애연금, 사회보험) : 가입자의 소득수준이 가장 높았던 3년간 연평균임금의 37.5% + 180개월을 초과하는 가입기간 1개월 당 연평균임금의 0.09375% 증액
 - 최저연금액 : 월 300 cedi
 - 최고연금액 : 가입자의 소득수준이 가장 높았던 3년간 연평균임금의 60%
 - 급여조정 : 급여액은 매년 재심사하고 전체 납부자 임금의 평균 증가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장애급여 (의무직역연금) : 총 납입보험료(사용자+근로자)에 경과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

○ 유족연금

- 유족일시금 (유족급여, 사회보험)
 -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의 사망 : 사망일 이후부터 75세까지 수급하였을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일시금 지급
 - 연금수급자가 아닌 가입자의 사망 : 15년분의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일시금 지급
- ※ 연금의 현재가치 환산 : 국고채 91일물 금리 또는 10% 중 낮은 금리 적용 (2019년

7월 1일 기준 국고채 91일물 금리는 14.7438%)

- 유족급여 (의무직역연금) : 총 납입보험료(사용자+근로자)에 경과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

7 관리운영기관

- 국민연금규제청(National Pensions Regulatory Authority)
 - 전반적인 관리 감독
 - <http://npra.gov.gh>
- 사회보장 및 국민보험신탁(Social Security and National Insurance Trust)
 - 3자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회보험제도 운영
 - <http://www.ssnit.org.gh>
- 국민연금규제청으로부터 승인된 민간 기관
 - 등록된 연기금 펀드매니저 및 관리인과 협조하여 의무직역연금제도를 운영

<2019년 ISSA 자료>